[사 건 명] 행심 2018 - 17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재결이유]

Ⅰ. 사건개요

가. 2017. 11. 24. 청구인과 ■■■가 서로 다툰 사건으로, 2017. 12. 12. 청구인은 서면사과 조치, ■■■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나. 2017. 12. 28. ■■■가 옷으로 청구인을 치자 청구인이 이에 기분이 나빠 ■■■를 때렸고, ■■■도 청구인을 때렸고, 서로의 사물함과 책상의 물건을 꺼내어 던지고 밟았다.

다. 이후 수업 도중 ■■■는 연필을 들고 청구인에게 달려들었고, 청구인은 볼펜을 들고 ■■■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싸우자 담임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의 제지하여 싸움을 멈추었다.

라. 2018. 01.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4시간)』**, ■■■에게는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10시간, 학생 및 학부모 부가적 특별교육(학생 2시간, 보호자 7시간)』 처분 조치했다.

Ⅱ.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와 부딪치지 않으려고 했었고, ■■■에게 먼저 싸움이나 시비를 걸지 않았다.

나. ■■■ 학생이 컴퍼스나 연필, 가위로 청구인에게 위협을 가하였고 청구인은 ■■■에게 물건을 들고 위협을 가한 적이 없으며, 볼펜을 들어 막는 행동을 한 것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물건을 들면 자신을 죽일 것 같다는 트라우마가 생겨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 청구인의 행동은 대부분 자기방어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서로 싸웠고 한 대라도 때렸다는 이유로 쌍방으로 가해처분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진술서에서도 청구인은 ■■■ 학생을 때리고 물건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방어 목적의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 '싸움'에 해당하고 청구인 역시 상대 학생을 때리고 물건을 던진 행위를 함으로써 ■■■ 학생에게 신체·재산상의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나. 피청구인은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에 따라 심각성 1점, 고의성 2점, 반성정도 1점, 화해정도 2점으로 판단하였고, 총 6점에 해당하여 3호 조치 학교봉사 처분과 함께 양측 학생이 서로 계속 싸우고 있으므로 2호 조치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와 부가적 특별교육 4시간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 학생의 진술서, 담임 선생님 목격 진술서 및 목격자 진술서를 근거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처분에 이른 것이다.

라. 청구인은 이 외에도 ■■■와 청구인을 같은 공간에서 진술서를 쓰게 하고, 학폭위 날 두 학생의 학부모를 같은 공간에서 대기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이는 본 사건 처분과는 무관한 사건인 1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주장일 뿐이다.

Ⅳ.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관계법령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

2.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 청구인의 모 및 피청구인의 대리인 구술심리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7. 12. 28. ■■■가 옷으로 청구인을 치자 청구인이 이에 화가나 ■■■를 손바닥등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수업 도중 ■■■가 연필을 들고 청구인에게 달려들자, 청구인은 볼펜을 들고 ■■■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싸운 사실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바,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일정정도 ■■■의 지속적인 가해행위에 대하여 방어적인 의미로 이 사건 행위들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의 다툼 가운데 ■■■를 손바닥등으로 때리고, 볼펜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싸웠던 이 사건 행위들은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정당방위 주장을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위와 같은 싸움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또는 과잉방위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재량의 남용.일탈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그 입법목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본 사안의 경우 전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일정정도 ■■■ 학생의 지속적인 가해행위에 대하여 방어적인 의미로 이 사건 행위들을 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청구인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과 ■■■ 학생 사이에 화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안이 다시 발생하고 추가적인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에서의 봉사와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피해자와 거리를 두어 이를 사전에 예방함과 더불어 반성과 변화의 기회를 삼아 청구인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학교에서의 봉사와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등은 적절하다 할 것이며,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 부당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청구인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피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Ⅴ.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